

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05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4. 6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장기간 미 정비된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, 아울러 어문규범에 맞는 자간 띄어쓰기 및 문구 정비를 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시민이 파악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학금 지급 대상을 새마을지도자,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의 자녀로 구체화 (안 제1조)
- 나.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따른 정비 및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 (안 제2조에서 제11조까지)
- 다. “대구광역시새마을회”를 “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”로, “구·군새마을지회장”을 “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 구·군지회장”으로 명칭을 정비하고, 장학금 신청자를 “구·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”에서 “읍·면·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, 새마을부녀회장, 새마을문고분회장”으로 정비 (안 제4조)
- 라. 시지부회장이 장학생 선정 시 의견 참작 대상자를 “시 교육감”에서 “학교장”으로 변경 (안 제5조)
- 마. 장학생의 의무에서 “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”는 문구 삭제 (안 제10조)
- 바. “구”를 “구·군”으로 변경 (안 제8조, 제11조 및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나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18. 2. 20. ~ 3. 12.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2) 규제심사 : 대상 아님
 - 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 - 4) 부패영향평가 : 개선 의견 없음
 - 5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새마을지도자”를 “새마을지도자,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유공자장학금,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”을 “유공자 장학금,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2년제”를 “2년제 이상”으로 하며, “유공자장학금과 우등생장학금”을 “유공자 장학금과 우등생 장학금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지역새마을지도자”를 “지역 새마을지도자”로, “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”를 “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‘B’ 학점 이상인 자”를 “학과 성적이 평균 평점 B학점 이상 또는 소속 학년 전체의 상위 100분의 40 이내인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”를 “특기생 장학생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새마을 지도자 1인”을 “새마을지도자 1명”으로, “1자녀로 하고”를 “자녀 1명으로 한정하고”로,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구·군새마을지회장”을 “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 구·군지회장”으로, “대구광역시새마을회(이하 “시새마을회”라 한다) 회장이 시장”을 “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회장(이하 “시지부회장”라 한다)이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단”을 “다만”으로, “구·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”을 “읍·면·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, 새마을부녀회장, 새마을문고분회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회장”을 “시지부회장”으로, “시 교육감”을 “학교장”으로, “심사선정”을 “심사·선정”으로, “개시 20일 이내”를 “개시 후 20일 이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표창중”을 “표창 중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새마을사업중”을 “새마을사업 중”으로, “부상 당한”을 “부상당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비율 1:1로”를 “비율이 같도록”으로, “적격자가”를 “자격에 적합한 사람”으로, “정원의 범위 안”을 “제1항의 범위”로 한다.

제7조 단서 중 “다만”을 “다만,”으로 하고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”를 “구·군지회장이 매학기 개시 후”로, “일시에”를 “한꺼번에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가”를 “사람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, “계속”을 “장학금을 계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장학생의”를 “장학생이”로 하며, 같은 조제2항 중 “제1항에 규정된”을 “제1항의”로, “시지부 회장”을 “시지부회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타에”를 “사회의”로, “하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구”를 “구·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구”를 “구·군”으로, “현금”을 “헌금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소요예산”을 “필요한 예산”으로, “구별로 소요액을 산정하여 구에 시달”을 “구·군별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구·군에 통보”로, “구를”을 “구·군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u>새마을지도자,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</u>----- -----.</p>
<p>제2조(장학금의 종류) 새마을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의 종류는 <u>유공자장학금,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</u>으로 구분한다. 다만, 대학생(2년제 대학생을 포함한다)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<u>유공자장학금과 우등생장학금</u>으로 구분한다.</p>	<p>제2조(장학금의 종류) ----- -----<u>유공자 장학금,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</u>----- -----<u>(2년제 이상)</u>----- -----<u>유공자 장학금과 우등생 장학금</u>-----.</p>
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 장학금 지급 대상자(이하 "장학생"이라 한다)는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<u>지역새마을지도자(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</u>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녀 또는 유자녀(이하 "자녀"라 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부모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 중 <u>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이내에</u> 해당하거나 평점 'B' 학점 이상인 자</p> <p>3.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</p> <p>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<u>1자녀로</u>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.</p>	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 ----- -----<u>지역 새마을지도자(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</u>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녀 또는 유자녀(이하 "자녀"라 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부모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 중 <u>학과 성적이 평균 평점 B학점 이상 또는 소속 학년 전체의 상위 100분의 40 이내인 사람</u></p> <p>3. 특기생 장학생은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</p> <p>② ----- <u>각 호</u>----- <u>새마을지도자 1명</u>----- <u>자녀 1명으로 한정하고</u> ----- ----- <u>사람은</u> -----.</p>
<p>제4조(추천)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<u>구·군새마을지회장(이하 "구·군지회장"이라 한다)과 구청장·군수의 공동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새마을회(이하 "시새마을회"라 한다) 회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. 단, 구·군지회장은 구·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4조(추천) -----<u>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 구·군지회장</u>-----<u>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회장(이하 "지부회장"이라 한다)이 대구광역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</u>----- -----<u>다만,</u> ----- -----<u>읍·면·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, 새마을부녀회장, 새마을문고분회장</u>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선정) ① <u>시회장이</u> 구·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<u>시 교육감</u>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<u>심사선정</u>하여 매학기 <u>개시 20일 이내</u>에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</p> <p>3.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<u>부상 당한</u> 지도자의 자녀</p> <p>4. 기타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선정) ① <u>시지부회장</u>----- -----<u>학교장</u>----- -----<u>심사·선정</u>----- ----- <u>개시 후 20일 이내</u>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표창 중</u> ----- -----</p> <p>3. <u>새마을사업 중</u> ----- <u>부상당한</u> ----- -----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장학생의 정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장학생은 <u>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 1:1로</u> 선발하되, <u>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</u> 이를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장학생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비율이 같도록</u> ----- -----, <u>자격에 적합한 사람이</u> ----- <u>제1항의 범위</u>-----.</p>
<p>제7조(장학금) <u>고등학교 장학생에게</u>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, <u>대학교 장학생은</u> 매년 <u>고등학생 공납금 전액(최고금액)</u>의 120퍼센트로 한다. <u>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</u> 장학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장학금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다만, 범위</u>----- -----.</p>
<p>제8조(장학금의 지급시기) 장학금은 <u>구청장·군수와 구지회장이</u>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<u>일시에</u>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장학금의 지급시기) ----- - <u>구·군지회장이 매학기 개시 후</u> ----- ----- ----- -----<u>한꺼번에</u> ----- -----.</p>
<p>제9조(지급 및 정지)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<u>각호</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<u>없는 한</u>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<u>계속</u>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(생략)</p> <p>3. <u>장학생의</u> 퇴학·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구·군지회장은 <u>제1항에</u>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<u>시지부 회장</u>에게 보고하고, 구청장·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.</p>	<p>제9조(지급 및 정지) ① ----- <u>사람</u> <u>이</u> ----- <u>각 호</u>----- <u>없</u> <u>으면</u> ----- -----<u>장학금을 계속</u>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장학생이</u>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제1항의</u> ----- ----- <u>시지부회장</u>-----,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장학생의 의무)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<u>타에</u> 귀감이 되어야 하며 <u>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국가발전에</u> 이바지하여야 한다.	제10조(장학생의 의무) ----- <u>사회의</u> ----- 한다.
제11조(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) ① 장학금 기금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및 <u>구</u> 에 장학기금 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 및 <u>구</u> 의 일반회계 전출금, 국고보조금,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<u>현금</u> 으로 한다.	제11조(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) ① 장학금 기금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및 <u>구·군</u> 에 장학기금 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②----- <u>구·군의</u> ----- ----- <u>현금</u> 으로 한다.
제12조(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) 시장과 구청장·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<u>소요예산</u> 을 지방비로 확보하되, 시 50퍼센트, 구·군 50퍼센트의 비율로 확보하고 시장은 매년 <u>구별로 소요액을 산정</u> 하여 구에 <u>시달</u> 하여야 하며, 시의 예산으로 <u>구</u> 를 보조하여야 한다.	제12조(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) ----- ----- ----- <u>필요한 예산</u> ----- -----, ----- <u>구·군별로 필요한 금액</u> <u>을 산정</u> 하여 <u>구·군에 통보</u> -----, --- <u>구·군</u> 을 -----.

관 계 법 령

□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(약칭: 새마을조직법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새마을운동조직"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,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,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, 새마을문고중앙회,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 [전문개정 2011.5.30.]

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새마을회 관련 명칭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하여 법규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, 새마을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나, 조례에 누락된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 자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,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발생은 없음.

4. 작성자 :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 상 희